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우선 접속 허용 및 발전사업 허가기준 완화〉
- 주철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20호)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21호)
 - 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44호)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59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9

[의안번호 221452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주철현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25.
3. 회부연월일 : 2025. 11.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또는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지역 공동체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계통이 이미 최대용량에 도달하여 추가 전력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전기설비의 이용이 제한되어 국가시책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정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 신설).

[의안번호 221452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지혜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25.
3. 회부연월일 : 2025. 11.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공동체 중심의 재생에너지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주민소득 증대,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 공익적 가치가 높아 정책적으로 보호·육성할 필요성이 큼.

그러나 현행법은 송전·배전설비 이용에 관한 ‘비차별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어, 규모가 작고 지역공동체 기반의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분산형 재생에너지사업이 대규모 설비 위주의 계통 운영 구조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받으며, 지역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한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해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기반 소규모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의안번호 221494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안호영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5.
3. 회부연월일 : 2025. 12.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배전사업자에게 전기공급 및 계통접속 과정에서 “차별 없는 이용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어, 전기사업자 간 접속 경쟁은 기본적으로 선착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과 같이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민간 영리 목적의 일반 사업자와 구분 없이 계통 접속 대기열에서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계통 용량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민간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쟁해야 하므로,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행 법 체계가 공동체형 분산전원의 정책적 필요성과 공공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하여는 계통 접속 과정에서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정된 계통 자원을 주민참여·공공성 기준에 따라 우선 접속·배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에너지소득 환류, 지역경제 활성화, 분산전원 확대 등 국가의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함(안 제20조 및 제45조).

[의안번호 221625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주영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22.
3. 회부연월일 : 2026. 1.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력망 포화로 인한 계통 접속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역시 계통 접속 과정에서 장기간 대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익성이 높고 일정규모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현행법령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 재생에너지사업 중 계통안정화 설비 또는 기능을 구비한 경우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예외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제4호의2 및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4건의 개정안은 현행법상 송·배전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선착순 접속)' 원칙에 예외를 두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마을공동체 등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전력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제4호의2 개정,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제45조제4항 신설).

구체적으로, 주철현의원안은 송·배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참여자에게 전기설비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제20조제5항을 별도로 신설함.

박지혜의원안과 안호영의원안은 제20조제1항의 차별금지원칙에 단서를 신설하여 각각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과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 접속 특례를 명시하였으며, 특히 안호영의원안은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 시 우선 접속 지시 권한(제45조제4항)을 추가함.

김주영의원안은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과 함께, 계통안정화 설비 또는 기능을 갖춘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발전사업 허가 기준 중 '전력계통 운영 지장 여부' 요건을 예외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7조제5항제4호의2를 개정함.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주철현의원안	박지혜의원안	안호영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 ④ (생 략) ⑤ 전기사업 의 허가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4의2. 발전 소나 발전 연료가 특 정 지역에 편중 되어 <u>전력 계통</u> <u>의 운영에</u> <u>지장을 주</u> <u>지 아니할</u> <u>것</u>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현행과 같음)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현행과 같음)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현행과 같음)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1. ~ 4. (현 행과 같음) 4의2. ----- ----- ----- ----- <u>전력 계통</u> <u>의 운영에</u> <u>지장을 주</u> <u>지 아니할</u> <u>것(단, 제</u> <u>20조제1항</u> <u>단서 조항</u> <u>에 따른</u> <u>공익적 목</u> <u>적의 재생</u> <u>에너지 발</u> <u>전사업 중</u> <u>기 후에 너</u>

[illegible]

현 행	주철현의원안	박지혜의원안	안호영의원안	김주영의원안
		----- ----- ----- . 다 만, 대통령 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과 주 민 소 득 증대를 위 하여 추진 되는 마을 공동체 재 생에너지사 업의 경우 에는 전력 계통의 안 정성에 지 장을 주지 아 니 하 는 범 위 에 서 우선 접속 을 허용할 수 있다.	----- ----- ----- . 다 만, 「신에 너지 및 재 생 에 너 지 개발·이용 · 보급 촉 진법」 제2 7 조 의 2 에 따른 주민 참여형 신 · 재생에너 지 발전사 업에서 생 산된 전기 에 대해 해 당 사업에 참여한 주 민의 우선 이용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일 부 전기사 용 자 에 게 우 선 하 여 이 용 하 게 할 수 있다.	----- ----- ----- . 다 만, 대통령 령으로 정 하는 요건 을 충족하 는 공익적 목적의 재 생 에 너 지 발전사업에 대 해 서 는 다른 전기 사 업 자 에 우 선 하 여 그 전기설 비에 접속 하도록 할 수 있다.

현 행	주철현의원안	박지혜의원안	안호영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신 설>	⑤ 제1항에 도 불구하 고 송전사 업자 또는 배전사업자 는 「신에 너지 및 재 생 에 너 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 진법」 제2 7 조 의 2 에 따른 신 · 재 생 에 너 지 발 전 사 업 등 대통령 령으로 정 하는 사업 에 참여하 는 자에게 그 전기설 비를 우선 이 용 하 게 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 음)	② ~ ④ (현행과 같 음)	② ~ ④ (현행과 같 음)
제45조(전력계 통의 운영			제45조(전력계 통의 운영	

현 행	주철현의원안	박지혜의원안	안호영의원안	김주영의원안
방법) ① ~ ③ (생 략) <신 설>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한국전력 거 래 소 는 제1항 후단 에도 불구 하고 「신 에너지 및 재 생에너 지 개 발 · 이 용 · 보급 촉 진법」 제2 7 조 의 2 에 따라 주민 이 참여한 신 · 재 생에 너지 발전 사업을 통 해 생산된 전기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전 력 계 통 에 우 선적 으로 접 속 하 게 할 수 있다.	

[개정안별 주요 특징 및 차이점 비교]

구 분	개정 대상 조문	우선 접속 대상 (법안 명시 요건)	주요 특징 및 차이점
주철현 의원안	제20조제5항 (신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차별 금지 원칙(제1항) 외에 송·배전사업자의 우선 이용 허용 권한을 별도 항으로 신설
박지혜 의원안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되는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전력계통의 안정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기술적 전제 조건 부가
안호영 의원안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제45조제4항 (신설)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송·배전설비 우선 이용 규정 외에,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 지시 권한을 추가 명시
김주영 의원안	제7조제5항제4호의2 (개정)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우선 접속 허용뿐만 아니라, 계통 안정화 설비 구비 시 발전사업 허가기준(계통 지장 여부) 특례 동시 적용

현행 「전기사업법」 제20조제1항은 송·배전사업자에게 전기설비 이
용 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이른바 ‘망 중립성(Net Neutrality)¹⁾’과
선착순 접속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특정 지역(호남, 제주 등)을 중심으로 전력계통이 부족

1) 「전기사업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핵심 원칙으로, 송전·배전사업자가
독점하고 있는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나 사용자가 부당한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
공해야 할 의무.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
자등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금지 행위) ① 전기사업자등은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
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할 때 부당하게 차별을 하거나 이용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지연하는 행위

함에 따라, 지역사회 주도의 공공적 성격을 지닌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사업조차 민간 영리 사업자와 동일한 대기열에서 장기간 접속을 대기해야 하는 실무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54kV 변전소²⁾ 접속을 위해 통상 15개월이 소요되나, 송·배전망의 물리적 수용 능력을 초과한 계통 부족 지역³⁾의 경우 평균 78개월의 추가 대기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 지연이 확인됨.

[권역별 154kV 변전소 여유 용량 및 접속 대기 현황 ('25.12월 기준)]

구 분	합 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변전소 여유 용량 (MW)	91,730	50,733	1,948	10,950	24,468	2,719	912
대기 발전계약 수	23,180	262	709	1,613	5,488	14,828	280
대기 용량 (MW)	3,939	69	171	225	864	2,472	138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위 표에서 나타나듯, 2025년 12월 기준 전국 154kV 변전소의 대기 발전계약 수는 총 23,180건(대기 용량 3,939MW)에 달함.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집중된 호남권의 경우 대기 물량이 14,828건(2,472MW)으로 전체 대기 용량의 약 62.7%를 차지하며 극심한 병목 현상을 보이고 있음.

반면,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은 50,733MW의 막대한 여유 용량

2) 154kV(킬로볼트) 변전소: 발전소에서 생산된 초고압 전력을 지역 배전망으로 보내기 위해 전압을 낮추거나(강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국 송전망으로 보내기 위해 전압을 높이는(승압) 역할을 하는 핵심 전력계통 설비.

3) 특정 지역에 발전설비가 단기간에 과도하게 밀집하여, 해당 지역의 송전선로·배전선로 및 변전소가 물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전력의 한계치(용량)에 도달한 상태를 의미함.

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기 물량은 69MW에 불과하여, 전력의 생산(비수도권)과 소비(수도권) 간 지리적 불일치로 인한 특정 지역의 계통 접속 적체 현상이 수치로 뚜렷하게 확인됨.

개정안은 이처럼 심화되는 계통 부족 현상 속에서 한정된 전력망 자원을 '공익성'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우선 배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는 소규모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을 통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특정 사업자에게 전력망 우선 이용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행법의 근간인 망 중립성 및 비차별 원칙에 예외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선착순 원칙을 신뢰하고 대기 중이던 기존 사업자의 신뢰보호 및 재산권 침해 우려, 특례를 악용하는 위장 공동체 난립 방지를 위한 엄격한 수혜 요건 설정, 그리고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 연계에 따른 전력계통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전력계통 우선 접속 허용(제20조) 특례 신설의 조문 체계 정합성 및 법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발의된 4건의 개정안은 모두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우선 접속'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를 구현하는 조문의 위치와 방식에 차

이가 있음.

구체적으로 박지혜·안호영·김주영의원안은 망 이용의 '차별 금지 원칙'을 선언한 제20조제1항 본문 뒤에 단서를 신설하여 우선 접속의 예외를 인정함.

반면 주철현의원안은 제20조제5항을 신설하여, 송·배전사업자가 특정 공익 사업자에게 전기설비 우선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별도의 항으로 부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이처럼 4건의 개정안은 모두 공익적 사업에 대한 접속 특례를 부여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심사 과정에서 타 입법례의 예외 규정 방식 등을 참고하여 법체계에 부합하는 조문 구조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한정된 공공재인 전력망을 특정 대상에게 우선 배분하는 것이 현행법의 근간인 망 중립성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정부법무공단은 "비차별적 접속 원칙을 유지하면서 공익 목적을 위해 법률에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유권해석(2026. 1. 14.)을 제시하였음.

이는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⁴⁾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저상버스 배차 비율 할당⁵⁾ 등과 같이, 일반 이용자의 편익이

4)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 등에 따라 지정된 차(대중교통 등)만 통행할 수 있는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일반 차량의 통행을 예외적으로 제한함.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및 제15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저상버스의 배차 순서를 적절히 편성하도록 하고, 도시철도 차량의 10분의 1 이상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도록 의무화하여 한정된 공간을 공익 목적으로 우선 할당함.

일부 제한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뚜렷한 경우 법률로 차별적 이용을 정당화하는 타 입법례와 유사한 취지임.

따라서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우선 접속 특례는 법리적인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특례의 남용을 막기 위해 '공익적 목적'의 대상을 하위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기존 대기 사업자에 대한 영향 최소화 및 제도 악용 방지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선 접속 특례가 도입될 경우, 기존의 선착순 원칙을 신뢰하고 접속을 대기 중이던 일반 발전사업자들의 접속 시점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일반 사업자가 우선 접속 혜택을 받기 위해 명의만 빌려 형식적으로 마을공동체를 구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할 우려도 제기될 수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신설될 시행령을 통해 우선 접속 대상을 설비용량 '1MW 이하'의 소규모 발전사업으로 제한하고 그 대상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햇빛소득마을⁶⁾' 또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른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⁷⁾' 등으로 한정하여

6) 행정안전부에서 2030년까지 2,5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주민 주도로 소규모 태양광(300kW~1MW) 등을 설치하고 그 수익을 마을 교통 복지, 식당 운영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환원하는 마을공동체.

7)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작용을 방지하겠다고 하면서, 기존 대기 사업자의 접속 지연을 줄이기 위해 장기 지연되거나 사업 의사가 없는 이른바 '지연·허수사업자'의 회수 물량(호남지역 약 3.5GW 등)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이러한 부처의 대책은 기존 사업자의 불편을 줄이고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선별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로 이해됨.

다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위 법령에 주민 참여 비율, 이익 공유 방식 등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사후 관리 방안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발전사업 허가기준 완화(제7조) 및 전력계통 운영(제45조) 특례 신설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김주영의원안은 발전사업 허가 시 '계통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는 현행 요건(제7조제5항제4호의2)⁸⁾을 적용함에 있어, 계통안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구역 편입 토지 소유자 또는 주변지역 거주 주민이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발전사업.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3조(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등의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등의 소유자[실시계획 승인일 당시 소유자(공유 관계인 경우에는 공유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대표자) 1인을 말한다]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인 주민(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이 실시계획 승인일 이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하며, 읍·면·동별 1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여 10메가와트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9세 이상의 소유자등일 것
2.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읍·면·동의 소유자등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것

8)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4호의2: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기준 중 하나로,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여 무분별한

정화 설비⁹⁾를 구비한 공익 목적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예외로 인정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출력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라도 실시간 감시·제어가 가능한 경우 안정적인 계통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술적 검토 의견을 고려할 때, 계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을 법률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반면, 안호영의원안은 한국전력거래소가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전력계통에 우선적으로 접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 운영방법(제45조제4항 신설)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설이 논의되는 제20조제1항 단서(송·배전설비 우선 이용) 및 현행 제45조제2항¹⁰⁾의 예외 지시 권한을 통하여 실무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조문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따라서 심사 과정에서 발전사업 허가 요건에 예외를 명시하는 방안

발전소 난립을 통제하고 있음.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9) 계통안정화 설비: 전력망의 주파수 및 전압 유지, 과부하 방지를 위해 발전기의 출력을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하고 제어(Curtailment)할 수 있는 설비(예: ESS 연계, 스마트 인버터 등).

10)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지시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력거래소의 유연한 계통 운영 권한을 보장하고 있음.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지시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과 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부처의 실무적 수용 여부 및 현행 조문과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독일 등 주요국의 입법례에서도 전력계통 접속 시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특례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음.

특히 독일 「재생에너지법(EEG)」¹¹⁾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우선 접속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는 한편,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시민에너지 회사(Bürgerenergiegesellschaft)'¹²⁾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 면제 및 시장보조금(Market Premium)¹³⁾ 청구권 등 강력한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독일 재생에너지법(EEG)상 시민에너지회사 특례 주요 내용]

구분	관련 조문	주요 내용
공익성 선언	제2조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와 운영은 우선적인 공익에 부합하며, 보호법익 고려 시 최우선으로 취급함
우선 접속 의무	제8조	-망운영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입지로부터 최단 직선 거리에 위치한 망 지점에 우선적이고 지체 없이 연결해야 함

11) 독일 재생에너지법(Erneuerbare-Energien-Gesetz, EEG): 독일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핵심 법률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에 대한 우선 접속권(Priority Connection)과 고정가격매입제도(FIT) 및 시장보조금 제도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12) 시민에너지회사(Bürgerenergiegesellschaft): 독일 EEG 제3조에 명시된 개념으로, 대형 자본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이나 회사. 지역 주민의 지분율과 의결권을 엄격히 규정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역 이익 환원을 보장함.

13) 시장보조금(Market Premium):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 도매시장에 직접 판매할 때,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입찰 또는 법정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지원금.

구분	관련 조문	주요 내용
시민에너지회사 정의	제3조제15호	-예정된 설비 반경 50km 내에 거주(주거 등록)하는 자연인이 의결권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협동조합 등의 회사
보조금 및 입찰 예외	제19조, 제22조	-소규모 설비(육상풍력 18MW, 태양광 6MW 이하)를 운영 하는 시민에너지회사에 대해 경쟁 입찰을 면제하고 시장 보조금 청구권 부여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러한 해외 입법례는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소규모 분산 전원을 촉진하기 위해 실체가 명확한 공익적 지역 조직에 실질적인 전력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의 취지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심사 시 이를 참고하여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우선 접속 특례를 법정화하는 경우에도 위장 공동체 난립을 막기 위한 엄격한 자격 요건을 하위 법령에 명확히 위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7